

## 6. 농업실습교육원

### 가. 설립일자

- 2001. 09. 01. 농과대학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동물사육장을 통합하여 전남대학교 실습장 관리단으로 조직 개편
- 2002. 08. 20.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
- 2014. 10. 06.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

### 나. 설립목적

농업실습교육원은 농업전반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습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기관으로서 2001년 9월 1일자로 농과대학 부속기관인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동물사육장을 통합하여 대학본부 직할 부속기관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본 기관은 실습연구부(교내실습장, 나주실습장), 산림실습부(장성학술림, 보길도학술림), 대외협력부, 조경관리부의 4개 부서 4개 실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전반에 대한 현장중심의 우수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학생실습과 교수연구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교내실습장은 관리면적 45,199m<sup>2</sup>에 식물(농장), 동물(동물사육장), 산림(수목원) 중심의 관련 학생실습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학생실습지원시설(2동), 식물재배시설(온실 8동, 비닐하우스 32동), 동물사육시설(2동) 및 부대시설(8동) 등을 갖추고 있다.

나주실습장은 부지 면적 244,068m<sup>2</sup>에 농장과 동물사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우사육 시설(100두), 배과원(42,822m<sup>2</sup>) 및 선별저장시설과 및 실습지원시설(8동) 및 부대시설(10동) 등을 갖추 현재 한우 및 배 전국대표실습장으로 지정되어 농대생 및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성학술림은 9,175,461m<sup>2</sup>의 임야와 건물 6동, 비닐하우스 2동, 묘포를 갖추고 산림자원에 대한 학생실습 및 교수연구를 수행하며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길도학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11,047,384m<sup>2</sup>을 1973년부터 사용승인 받아 국내에서 유일한 난대학술림으로 성장하였고 난대 산림유전자원의 서식지내(in-situ) 보존을 위해 노력하며 난대림가꾸기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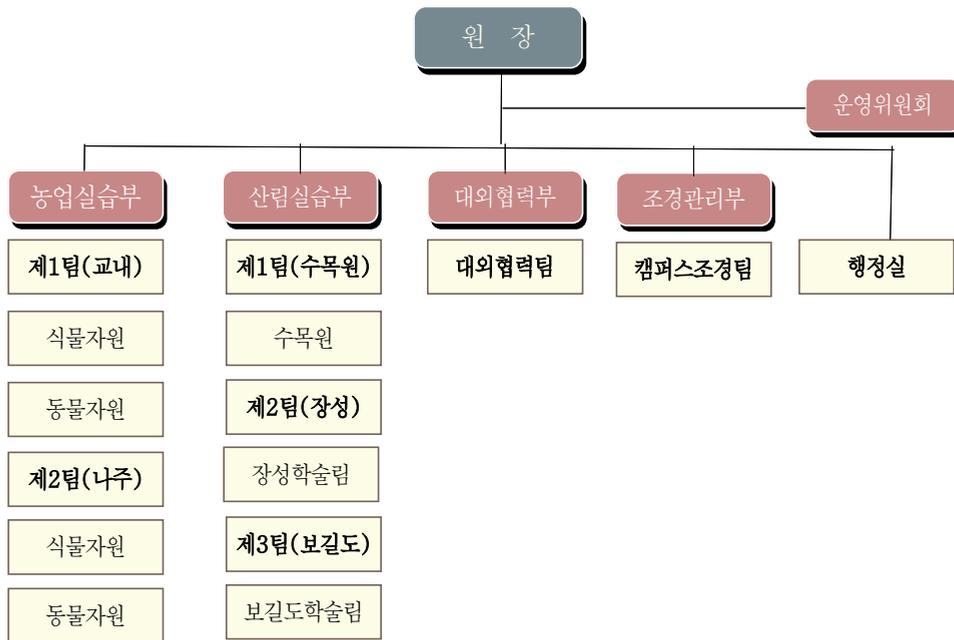
아울러 고유의 목적사업 이외에 농도 호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농민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고 대학의 선진기술을 이전하는 등 선진농업 구현 및 연구 자원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실습, 교수연구와 더불어 여기에서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통하여 현대인과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에 대한 교육과 실험연구지원 기관으로서 각 부서 기능의 활성화, 정상화를 통한 양적 교육에서 질적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학·연의 발전과 선진농업전시장 및 연구자원을 보존하고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조직을 구비하여 농업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경영을 병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유능한 인재 양성과 실사구시의 학문을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 다. 조직 및 기능

### (1) 조 직



### (2) 기 능

학생의 교육, 학술연구 및 산학협동에 필요한 기능들 중 첫째, 농업교육 및 생물산업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농업현장 실습교육 지원 및 대외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셋째, 교육원의 설치목적과 관련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각 부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실습부: 동·식물 자원을 유지 관리하며,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지원
- 산림실습부: 장성 및 보길도 산림자원을 유지 관리하며,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지원
- 대외협력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업교육, 지역민 및 학생봉사활동 지원
- 조경관리부: 캠퍼스 조경관리에 관한 업무

(3) 재산현황

토지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부지	전	답	과원 수목원 초지	임야	도로 구거	계
농 업 실 습 부	교 내 실 습 장	식물(농장)	9,907	14,340	11,941	-	-	36,188
		산림(수목원)	1,106	-	-	5,98	-	1,704
		동물(사육장)	2,107	-	-	5,200	-	7,307
		소계	13,120	14,340	11,941	5,798	-	45,199
	나 주 실 습 장	식물(식물)	16,190	78,545	23,977	43,502	-	162,214
		동물(사육장)	3,654	-	-	78,200	-	81,854
소계		19,844	78,545	23,977	121,702	-	244,068	
산 림 실 습 부	지 방 실 습 장	장성학술림	159	-	-	11,202	9,164,132	9,175,493
		보길도학술림	445	-	-	9,000	11,038,000	11,047,445
		제주학술림	-	-	-	-	16,529	16,529
		소계	604	-	-	20,202	20,218,661	20,239,467
합계		52,460	117,628	73,537	118,750	20,240,171	35,633	20,602,546

※ 보길도학술림 임야는 대부분림

시설현황

구분		주요시설	
교내실습장	식물	건물 16동 하우스 32동 컨테이너 5동 양수장 2개소	농교원 본관(902), 농기계창고(200), 농산폐기물분리수거장(96), 도시농업지원시설(18), 저온창고(18), 관정시설(50), 표본온실(340), 8연동온실(1,404), 쌍봉온실(192), 특성화온실(867), 미곡종합처리장(396), 농산물집하장(146), 농기계실험동(330), 목공실습실(137), 바이오매스파일럿플랜트(100), 바이오에너지파일럿플랜트(165), 목공창고(50), 목공시설 3동(88), 기후변화모의시설 6동(438), 집약연구시설 등 비닐하우스 32동(5,332), 컨테이너 5동, 양수장 2개소
	산림 (수목원)	건물 4동 유리온실 2동 양수장 1개소	수목학생실습관(198), 수목간이농기계사(56), 수목온실A동(162), 수목온실B동(216), 버섯재배사(112), 양수장 1개소
	동물	건물 2동 사육사 4개소 하우스 2동	실험계사(396), 특수동물사(250), 소동물사양실험시설(76), 가금시험시설(119), 채래닭사육장(744), 특수동물사(370), 동물기타시설(150)

구분		주요시설	
나주실습장	식물	건물 4개소 비닐하우스 1동 컨테이너 2동 양수장 1개소	학생실습관(237), 농기계창고(420), 과일선별저장고(825), 퇴비장(70), 물탱크 3개소, 격리시험장 2개소, 비닐하우스 1동, 양수장 1개소
	동물	건물 9동 컨테이너 1동 관정 2개소	실습준비동(542), 관정펌프장(19), 실습숙소(152), 우분탱크(79), 시험한우사(535), 한우번식우사(1,431), 발효퇴비사(278), 실습강의동(318), 실습장비보관창고(122), 차단방역시설
장성학술림	산림	건물 5동 비닐하우스 3동	관리사(20), 건조실(23), 저온실(36), 창고1(60), 창고2(14), 비닐하우스4동
보길도학술림	산림	건물 2동	관리사(164), 난대산림연구교육관(281)

## 라. 이용안내

### (1) 부서별 안내

부서		주소	대표전화	Fax
행정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 530-2186	(062) 530-2028
농업 실습 부	교내 실습장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 530-2027	(062) 530-2028
	나주 실습장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황룡길 34	(061) 331-2827	(061) 331-2801
산림 실습 부	장성 학술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42-1	(061) 394-7338	(061) 394-7561
	보길도 학술림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97-6	(061) 553-6212	(061) 553-6212
대외협력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 530-2187	(062) 530-2028
조경관리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 530-2026	(062) 530-2028

### (2) 실습장 이용에 대한 운영세칙

#### 1. 총론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관리 중인 실습부(실습연구부: 교내실습장, 나주실습장, 산림실습부: 장성학술림, 보길도학술림, 조경관리부 이하 "실습부"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육원의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온실, 하우스, 전.답작포, 수목원, 학술림, 측사 등, 이하 "시설"이라 한다)과 생산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적용한다.

## 2. 교육지원

제3조(실습지원) ①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여 교과과정 상 학생실습이 필요한 교수는 매 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실습장이용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 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원 부장은 이를 수합하여 교육원장에게 접수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생산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승인 통보한다.

③ 나주실습장 및 보길도학술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실습의 경우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시설(숙박)이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습교육에 필요한 인력, 실습기자재 및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 3. 연구지원

제4조(연구지원) ①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여 연구수행이 필요한 교수(이하 “담당 교수”라 한다)는 연구 개시 1개월 전까지 담당교수 명의의 연구이용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생산물의 이용 여부를 승인 통보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담당교수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교육원 시설 중 답작시험포는 경운, 정지 및 이앙(기계모 이앙에 한함)작업을 지원한다.

② 전작시험포, 양묘시험포 및 사료작물시험포는 경운(정지)작업을 지원한다.

제6조(시설 이용기간) ① 시설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 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여 연구과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제4조에 의한 연구이용신청서를 만료 1개월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이용기간 만료 후 사용한 시설을 최초의 상태로 완전 복구하고 연구폐기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중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담당교수가 연구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한 시설을 최초의 상태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담당교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실습장 관리

제7조(권리의무) ①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승인받아 이용하는 자(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는 승인받은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책무를 진다.

② 담당교수는 시설의 형상, 형질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원장은 시설의 기능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담당교수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담당교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⑤ 담당교수가 시설의 파손이나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부산물관리) ① 실습 및 실험연구에 따른 부산물(곡물, 채소, 과실류, 수목, 화훼류, 가축, 가금류, 가축 및 가금류의 생산물 등) 중 시료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은 교육원에 귀속한다.

② 담당교수는 실습 및 실험연구 결과 부산물 생산현황을 별지4호 서식에 의거 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폐기물 처리) 실험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쓰레기 등)은 담당교수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비 등으로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기폐기물은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담당교수의 연구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측될 때, 담당교수는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교수는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한 실험 및 연구를 향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세칙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단 승인 절차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 마. 연락 및 문의처

**전화:** 062) 530-2186, 2014 ~ 6

**팩스:** 062) 530-2028

**홈페이지:** <http://agric.jnu.ac.kr/user/indexMain.action?siteId=agrobio>